



[HACCP 기준원 기획연재]
**선행요건프로그램
차단방역관리 및 농장시설관리**

지난호에서는 선행요건프로그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아보았고, 이번호부터는 차단방역관리를 시작으로 각 항목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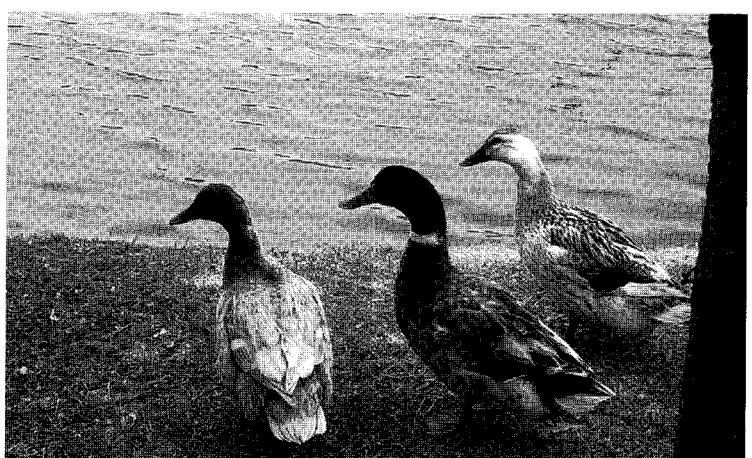
농장에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바로 차단방역이다. 올해 초 포천을 시작으로 4월에 인천, 김포, 충주 및 청양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보더라도 차단방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HACCP에서도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우선 농장의 정문에는 차단방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외부 방문자가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하며, 방문절차와 전화번호, 주의사항 등이 기입되어야 한다. 농장 방문자에 대한 출입



【방역 경고문 및 방명록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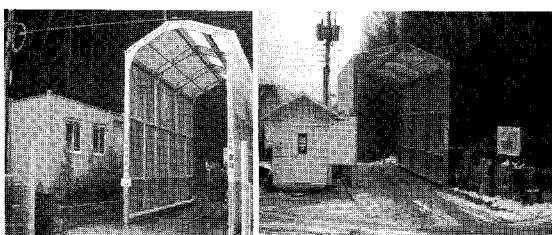
관리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농장을 방문하는 외부인 및 외부 차량에 대하여 출입관리 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농장입구에 출입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 대장에는 인적사항과 용무, 이전 방문지, 차량 번호, 소속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출입관리 대장은 질병 발생의 경우 원인 및 전파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기록이 누



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농장에 출입하는 출입자, 출입차량 및 반입물품에 대해서 소독조치가 되어야 한다. 소독설비 및 방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것으로 차량 및 사람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의 바퀴 및 출입자의 신발을 충분히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병원성 미생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리사 내외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각각의 농장은 농장에 적합한 소독시설을 갖추고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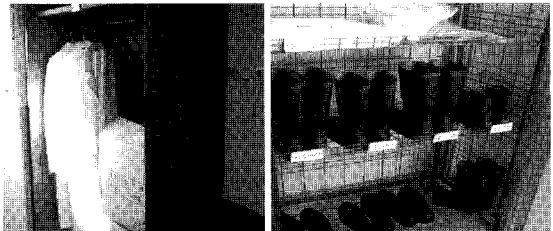
특히 겨울철의 소독효과를 위하여 동파 등의 방지를 위한 열선의 설치 운영 등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요구된다. 또한 농장 반입 물품에 대한 소독 관리에 있어 물품 반입 창고를 농장입구에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기자재 및 약품 등이 소독 처리를 위해 계류 후 농장내로 운반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 반입 물품은 농장 입구의 자외선 등이 설치된 물품 보관창고에 최소 24시간 이상 계류한 후 오리사로 반입 시킬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분무 소독한 후 반입한다.



【차량소독 장치 및 물품반입 창고 비치】

사료차량, 수의사, 출하관리자, 약품회사 관계자 등 상시 출입자의 경우 1회용 방역복을 권장하고 신발 및 의복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내 진입하도록 한다. 특히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자의 경우는 농장 출입 전후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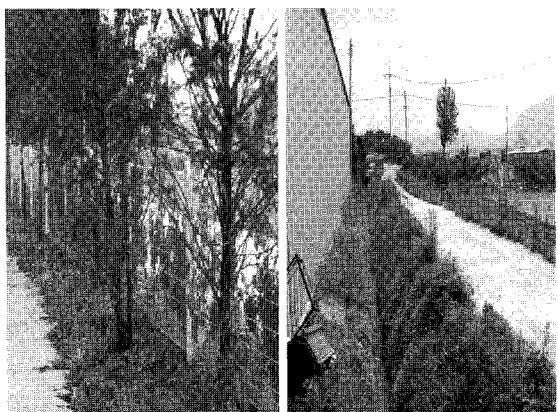
방문자용 방역복과 장화는 필히 준비하여 두어야 한다. 또한 가능한 농장 출입구에 비치하여 방문자에 대



【출입자용 방역복 및 장화】

한 차단 방역을 관리도록 하여야 한다.

사료 반입 및 오리 출하시 차량기사, 분뇨처리 차량기사, 외부농장 관계자 등의 축사내부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농장주의 통제하에 소독 등 조치이행 후 출입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상시 출입자가 휴대한 기계 및 기구 등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다. 외부인 등의 농장 무단진입 통제를 위하여 경계 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경계표시 울타리는 모든 인공 및 자연경계(도랑, 언덕, 논, 밭 등)도 가능하다. 또한 농장은 출입자 및 출입차량을 차단할 수 있는 정문 또는 외부와의 구분이 가능한 차단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 정문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



차단방역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며, HACCP을 위해서 별도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물품 반입 창고 외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차단 방역은 HACCP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장을 지키기 위한 농장 운영의 기본 사항이며, 이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